

1. 개정이유

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,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·양도·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,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함에도 별도로 관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바, 두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합(안 제7조, 제10조, 별표 3, 별지 제9호, 제10호, 제12호, 제15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00. ~ 2026.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“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(이하 “등록수첩”을 “등록증 및 등록수첩(이하 “등록증 및 등록수첩”으로, “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”을 “등록대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또는”을 “및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6호의 수수료란 중 “통해 등록증을”을 “통해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은 사용할 수 없다.

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

국가유산수리업등 종류 :	등록번호 :
상 호 :	대 표 자 :
영 업 소 소 재 지 :	
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 :	등 록 일 :

위와 같이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
등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적 인

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

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/ 변경사항

[illegible]

※ 확인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/ 변경사항

[illegible]

※ 확인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국가유산수리 능력

연도	국가유산수리의 업종	금액(천원)	고 시 일	기 록 자

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

(앞쪽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일
신청인	상 호	대 표 자		
	전 화 번 호			
	영업소 소재지			
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		등록번호		
재발급 신청사유				

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의 수수료
------	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등록증 발급 및 공고) ① 시 ·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 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 수리업등 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 이라 한다) 및 별지 제10호서식 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(이하 “등록수첩”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하며,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 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 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 하여야 한다.	제7조(등록증 발급 및 공고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등록증 및 등록수첩(이 하 “등록증 및 등록수첩”----- ----- ----- ----- 등록 대장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 제10조(등록증 등의 재발급)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 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 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·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등록증 등의 재발급) ---- -----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